

**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**



성 북 구 의 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번호	23
------	----

제안연월일 : 2026. 8. 25.
제안자 : 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37조 규정에 의거
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
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특별위원회 명칭: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
- 특별위원회 구성 및 방법
 - 위원회 구성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인씩 총 9인을 의장의 추천과
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구성
- 특별위원회 활동기간: 구성일부터 2028. 6. 30까지
- 심사안건: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
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

3. 관련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28조, 제37조, 제39조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□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조례

제28조(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.

제3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. 다만,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.

④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9명을 초과할 수 없다.

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.

⑦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특별위원회 경비 지급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.

제39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규정으로 정한다.